

◆ The problems of the Library Law in the field of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y (korea)

特輯

圖書館法의 問題點

——大學圖書館 分野——

任 鍾 淳
(延世大學校中央圖書館)

<目 次>

- 一. 序 論
- 二. 圖書館關係法內에서의 問題點
 - 1. 圖書館 設置에 關한 事項
 - 2. 施設基準에 關한 事項
 - 3. 圖書館資料에 關한 事項
 - a. 資料의 定義
 - b. 資料의 數的 規定
 - 4. 圖書館 司書에 關한 事項
 - a. 任用
 - b. 司書職員數
 - c. 司書職 待遇
- 三. 結 論

一. 序 論

圖書館法은 狹義로는 圖書館이란 特殊의範圍에만 適用된다고 볼 수 있으나 廣義로는 社會의 目的活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歷史의 움직임과 더불어 發展해가는 生動있는 規範으로 社會全體의 文化的 向上을 目的으로 하는 必然性인 規範인 것입니다. 이런 目的을 內包하고 있는 圖書館法中 大學圖書館에 대한 現行法은 어떻게 하며 또 歷史의 움직임과 더불어 發展해야 할 견지에서 볼때 이에 대한 問題點은 어떠한 것일까.

教育은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의 完成과 自主的生活能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을 具有케 하여, 이로써 民主國家發展에 奉仕할 基礎를 定立시켜 人類共榮理想實現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는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成就되는 것입니다. 大學教育도 이러한 理念아래 系統의으로 學問을 教授하여 研究의 基礎의in 段階의 總完成을 이루기 하는 最高學部에 位置하여, 이를 畢한후 實

社會에 豐出하였을때 各己 必要한 部門에서 이를 밀겨 름으로 하여 여러면에 適應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人生生活에 있어서 重要한 段階인 大學教育에 있어서, 더구나 이미 學生들에게 教科書內容을 受動의 으로 傳達시키는 注入式教育을 떠나 問答法을 써서 創意와 自發性을 刺戟하고, 自主的 學習의 態度와 習慣을 길러 주는 方法을 通하여 學究의 鍊磨를 指導하는 開發教育을 推進하고 있는 이때 이의 中樞의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곳은 大學校 圖書館인 것입니다. 大學圖書館의 目的是 大學教育에 있어一般的 教育事業을 達成하는데 도움이 될 奉仕와, 나아가 그가 위치한 大學의 特定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東西洋의 傳來文物은勿論 그 教科課程에 中心이 되는 特定分野의 資料도 함께 選擇備置하여 奉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大學圖書館은 資料의 利用과 奉仕面에 있어 講義計劃과 밀접한 관계의 維持를 考慮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大學圖書館은 講義計劃과 實行에 대한 充分한 資料面의 補助提供外로 高度한 研究에 精進하는 教授로 부터 學業에 邁進할려는 新入學生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充足토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大學圖書館은 學生들에게 平生資料利用의 習慣이 育成되게끔 자극을 주어 學窓生活을 마친후 實社會에서도 계속 자기 專攻分野의 資料利用을 하게끔 指導啓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二. 圖書館關係法 内에서의 問題點

歷史의 움직임과 더불어 向上 前進하는 學界의 推移에 副應할 大學圖書館에 대해 法의으로 어떤 規制와 保障을 받고 있는지 살펴 보면 大學設置基準令 第3條 第4項 및 第11條와 圖書館法 第3條, 第6條 第1項, 第25條 및 第26條와 同法施行令 第2條 第2項 그리고 第4條

등에 成文化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完全無缺한 法이란 어려운 것이며 이 또한 社會進展에 따라 그에 대한要求가 달라지는 것 이때 이런 경지에서 大學圖書館에 관한 法上の 問題를 다루어 보고자 한 것입니다.

1. 圖書館 設置에 관한 條項

大學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는 條項은,

(1) 大學設置基準令 第8條 第4項에 「校舍에는 圖書館을 包含한다」와

(2) 圖書館法 第25條第1項에 「……初級大學, 大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에는 圖書館을 두어야 한다」고 规定되어 있습니다.

이는 大學設置基準令에서 大學教育의 學究的 研究調查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中樞의 機關으로서 大學圖書館이 重要한 것임에도 不拘하고 이 法의 制定當時인 1955年 아직도 圖書館을 設置하지 않은 一部 大學에 圖書館을 設置해야 한다는 規制이었으며, 1963年에 公布를 본 圖書館法은 늦게나마 圖書館 全般에 關한 规定이 나온 것입니다. 本是 國家와 人類社會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廣範하고 精確 紹密한 應用方法을 教授研究하여 指導的인 人格의 陶冶를 目的으로 하고 있는 大學에 있어서 大學圖書館은 知的 資源의 保存者이며, 學問의 偉大한 繼承者며, 資料 利用의 原動力이며, 現在의 始發이 無언것 같으나 將來에 有라는 結實을 創造해 내는데 必須 不可缺한 要素인 位置에 있는 것입니다. 大學圖書館은 이러한 位置에서 그가 지닌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모든 機能을 發揮하여 弘益人間의 理念아래의 大學education의 目的을 完遂하는데 關键이 되는 것은 大學圖書館의 施設, 資料의 完不完과 司書職員의 適不適이 크게 左右하는 것입니다. 즉 施設, 人員, 資料의 세 가지가 잘 調和되고 이것의 適切한 奉仕運營이 대학교육에 知的 에너지를 供與하여 文化向上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2. 施設基準에 관한 條項

大學圖書館設置基準으로 圖書館法 第5條(도서관시설) 第1項에 「圖書館은 그 目的을 達成함에 필요한 建物, 圖書館資料, 閱覽施設 및 기타의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라 하였으되, 이 施設基準에 있어서는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開令으로 定한다」는 圖書館法 第25條 第2項과, 「法 第25條 第2項의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各級學校의 施設基準에 의한다고 圖書館法施行令 第2條 第2項에 明示되어 있습니다. 이는 圖書館法과 同法施行令에서 施設基準에 대해 大學設置基準令을 適用케 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即 大學設置基準令 第11條에 「圖書館의 設備와 (中略)……는 다음 基準에 의한다.

① 閱覽室, 定期刊行物室, 書庫, 事務室을 갖출것

② 閱覽室에는 학생 정원의 15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설치할 것이라고 规定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a. 大學圖書館設置基準을 大學設置基準令에 의하게 한 것은 圖書館法이나 同法施行令 制定當時 文教當局이 이를 學校圖書館의 發展에 도움을 주고자 생각하여 한 것 같입니다. 즉 大學圖書館의 施設을 마련하도록豫算을 配定하는 것은 각 學校의 行政者이기 때문에 항상 施設에 관심과 주의를 傾注하고 있는 行政責任者로 보아서는 圖書館法 보다는 大學設置基準令에 明示되어 있는 것인 索果의으로 나온것 같기 때문인 것 같이 그리 정한것 같습니다. 그러나豫算의 執行上 理由로 上記한 것과 같은 法制定이 되었다면, 施設과 같이 學校行政者가 管理하고 監督하는 人件費에 속하는 司書의 配當條項이 教育法施行令 第5節 學校의 一般職員數에 包含되어 있으면서, 또 따로 圖書館法施行令 第6條에도 规定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司書職을 學校의 一般職員과 區別시킨 것이며豫算上 管理란 同質인 施設과 人員이 各己 다른 特別法에 속해 는 것입니다. 이렇게 人員에 있어 別置했다면 施設基準도 좀 더 詳細한 规定을 하자 教育法施行令에 있는 大學圖書館施設基準에 「圖書館關係部分은 따로 法에 의해 정한다」는 條項을 제시하고 이를 圖書館法施行令으로 修正하여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b. 創意와 自發性을 刺戟하고 自主的 學習의 態度와 習慣을 길러 주는 教育方法을 支援함에는 大學圖書館에서 資料의 備置는勿論, 이런 資料를 檢索하기 쉽게 管理할 書庫에 대해서 大學圖書館施設基準令에서 规定지워 있음은 妥當합니다. 그러나 이런 資料는 그 性格에 따라 閱覽하는 곳이 다른데 施設基準令에는 一般閱覽의 뜻으로 考慮된 듯한 閱覽室과 學術雜誌의 利用을 위한 定期刊行物室만을 明示했을 뿐 現代 大學圖書館奉仕에서 重要面을 찾기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參考圖書閱覽室 등의 語句가 빠져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大學圖書館의 機能에서 必要한 目錄室, 展示室, 視聽覺室 등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 하나 必要한 室을 施設基準令에 羅列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의 提言을 하자 하는 것은 大學設置基準令 第11條 ①을 「閱覽室, 參考圖書室, 定期刊行物室 등등의 施設과 書庫를 갖출 것」이라고 改正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大學圖書館設置基準은 따로히 法으로 定한다」고 하고 圖書館法施行令에 詳細히 规定되었으면 합니다.

c. 施設基準令 第11條 ②에 「閱覽室에는 學生 定員의 15%以上을 收容할 수 있는 座席을 設置할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閱覽室이란 語句는 基準令 第11條 ①의 閱覽室, 定期刊行物室에서 앞의 것만 該當되는

感을 주니 自然히 定期刊行物室에는 座席이 없게 된다는 結論이 내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圖書館에는 學生 定員 몇 %……로 閱覽室 대신 圖書館이란 語句로 改正함이 좋을 것입니다. 또 하나 基準令에서는 學生 定員의 15% 以上으로 정했는데 閱覽座席數를 決定하는 要素은 大學圖書館의 제일 큰 奉仕 對象인 學生數인 것입니다. 이에 座席數는 現行의 15%에서 25% 以上으로 늘려 座席面에서의 受容態勢를 確立해야 할 것입니다(A.L.A.案은 學生數의 3分之 1線임)

3. 圖書館資料에 관한 條項

圖書館에 있어서 資料構成의 基準은 圖書館法 第25條 第2項에 「各級學校의 施設基準에 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 大學設置基準令 第11條 第3項에 보면 「圖書는 學生 1人에 대하여 30卷 以上으로 하되 學科當 5,000卷 以上과 學術雜誌 5種 以上을 備置할 것이다만 初級大學(醫豫科를 包含한다)과 教育大學에 있어서는 各己 3分의 2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圖書館에 있어서 資料構成은 各級 圖書館에 모두 適用되는 問題이 겠지만 특히 深奧한 學究를 하는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資料의 構成 또한 重要한 問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大學設置基準令 第11條에서 圖書의 數量을 規定하고 있으나 資料의 定義와 數量을 規定한 것에 대해 改正이 要望됩니다.

a. 資料의 定義

圖書館에 備置한 資料의 定義를 圖書에만 局限하고 있음을니다. 이 圖書란 語彙를 廣義로 해석하면 圖書館資料 全部로 간주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 규정한 權수를 보면 이는 순전히 도서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過去에는 資料를 圖書만이라 認識하였으나 現代의 도서관이 말하는 圖書館資料란 意義는 圖書만을 對象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基準令에 있는 圖書란 語彙는 圖書館法 第2條에 規定한 「圖書館이라 함은 圖書, 記錄, 視聽覺資料, 國家 및 地方行政資料, 鄉土資料 및 기타 필요란 자료……」와 比較하여 볼 때 相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圖書館資料에는 單行本인 圖書만이 아니라 特殊資料에 포함될 각종 記錄類, 視聽覺資料 등이 모두 포함됨으로 자료를 圖書란 語彙로 固定시킬 것이 아니라, 廣義的面에서 圖書館資料라 文句改正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b. 資料의 數的 規制

(1) 大學設置基準令 第11條에서 「圖書資料是 學生 1人當 30卷, 學科當 5,000卷이라고 數的으로 規定한 것은 1955年 8月 4日에 制定된 것으로 이는 圖書館法이 公布 되기 8年前이었고 또 그當時 많은 數字의 設立을 본 大學教育機關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기 위해 圖書館設置를 規定하고 이와 아울러 大學教育의 必要한 圖書

資料를 數的으로 規定한 것은 그當時로 보아 肯定아입니다. 그러나 이런 基準令에 맞는 數字는 當場에 아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文教當局은 大學에 있어서 圖書數도 包含한 모든 施設基準을 基準量에 到達시키기 위하여 年次의 漸增方法으로 基準令에 到達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學科에 따라 5年內 또는 6年內에, 또는 1953年까지, 또는 1965年까지 基準令에 到達되어야 한다고 規定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數字의 規定은 現在까지도 到達치 못하고 있는 狀態입니다. 이런 數量的 基準量에 대해 大學과 初級大學·專門學校로 구분하여 在籍學生數와 藏書量을 比較하면

구분	연도	재적생수	1인 기준 책수	기 준 양	현장서수	부족수
대	1970	174,274	30	5,228,220	4,851,007	377,213
학	1971	204,605	30	6,138,150	5,315,729	822,421
초	1970	31,632	20	632,640	307,695	324,945
전문	1971	37,528	20	750,560	311,660	438,900

등으로 1971년 현재 대학으로는 822,421권, 초급대학 및 전문학교로서는 438,900권의 기준 미달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數量的 設置基準은 圖書館資料의 豐富性을 채우기 위하여 우선 數量으로 全體의 基準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因하여 質的 資料構成面에서는 貧弱性을 나타 내게 되며 이는 大學圖書館에 不適當한 資料를 多數 所藏하여 結果的으로 書庫의 非經濟的 運營과 높은 數量에 比하여 블것이 별로 없다는 非難性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의 解決策으로서는 藏書構成에 關한 法規制力を 數的面에만 局限치 말고 質的面에의 關與를 置重하기 위하여 豫算上에 어찌한 規定이 필요한 것입니다.

大學圖書館에서 量도 考慮할 것이지만 그보다도 質的面에서 充實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基準令에 規定된 學生 1人當冊數는 오히려 逆效果를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大學의 行政當局이 그리하지는 않겠지만 法條文에 依하면 그리도 될것이다란 假定입니다. 즉例로서 現在의 在學生에 比例한 圖書數가 基準量에 到達했고 새로운 學科의 增設 또는 學生數의 增員이 없다면 새로운 圖書를 備置안하여도 無妨할 것이 아닌가. 같은 大學設置基準令에 明示된 建物의坪數 座席數 運動場坪數 등등은 學生數가 늘지 않거나 基準令이 改正되지 않는 한 現狀으로 維持된다고 할 수 있으나 學術文化의 變動, 發展, 新學說의 檻頭, 새로운 智識의 專來 등등으로 새로운 資料의 備置, 奉仕가 要望되는 圖書館에서는 基準令이 超過되었다 하드라도 豫算限度에서 資料를 蓄積하여 이의 適切한 奉仕 利用을 하여

야 합니다. 또 學生 1人當 冊數의 基準令은 圖書의 質的面 즉 價格面은 考慮안된 것입니다. 1,000원 가치의 圖書도 1권, 10,000원 가치의 圖書도 1卷이므로 數量만으로 規定한 基準令에서는 大學圖書館이 圖書의 基準量에 到達하기 위하여 限定된豫算에서 價格이 高價하여 數量을 減少시킬 貴重本이나 必要한 高價의 圖書購入은 自然히 抑制 當하여 資料의 質的面에서 貧弱性을 가져오게될 것입니다.

要る 大學圖書館은 大學에서 공부하는 學生과, 研究하는 教授를 상대로 하여 설립되어 있으니만치 校校 全體豫算에서 몇 %를 配當하는範圍內에서 資料의 適切한 構成을 圖謀해야 할 것입니다.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圖書館資料의 構成은 (1) 教科課程의 範圍와 性格 (2) 學科課程의 學科數와 性格 (3) 教授方法 (4) 學部學生과 大學院生의 學生數 (5) 그 地域에 있는 다른 圖書館의 利用으로 本身 滿足할 수 없는 보다 專門의 資料에 대한 教授들의 要求 (6) 그 大學圖書館의 特徵을 나타낼 特定分野의 圖書館資料 (7) 民族의 位置에서 保存研究에 必要한 國家의 古典 등을 考慮하여 약합니다.

(2) 學術雜誌에 관해서 設置基準令에는 各科當 5種以上이라 規定하고 있습니다. 現在 世界에서 發行되는 이들 種類는 數萬種이나 되며 (現在 우리나라는 518종임) 그중 必要한 各科 5種類라 하여도 價格面에서相當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實情에서各大學圖書館이 圖書의 設置準基令을 마추기 위해 數量만에 置重한다면 効果 있는 學術雜誌의 備置奉仕한 어려울 것이며 結果的으로는 數量的 統計數字를 確認하는 것의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3) 이미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圖書館 資料面에서 圖書와 定期刊行物만을 規定하였고 特殊資料에 대해서는 言及이 없다. 現在 圖書館에서 차지하고 있는 特殊資料의 役割 또한 큰 것이므로 이의 規定挿入 改正이 必要합니다. 여기서 다시 再論하건대 特殊圖書資料를 規定에 新入하였을 때 現基準令대로 하면 이의 數量의 規定이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圖書나 特殊資料(定期刊行物 包含)에 모두 質的面을 考慮한 規定이 必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 司書에 관한 條項

圖書館이 賦課된 使命을 成功的으로 完遂하기 위하여는 組織된 人間의 努力이 本質의인 것이며 이의 必須要件은 圖書館職員의 構成입니다. 圖書館의 機能을 發揮하고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圖書館의 合理的經營이 要請되며 이에는 組織이 不可缺한 것입니다. 이러한 組織에 活動的인 生命이 通하지 않으면 그 組織은 形骸에 지나지 않으며 實속이 없는 形態만의 組織

이 될 것입니다. 組織에 피를 통하게 하고 生命을 跳動시키는 것은 職員인 것입니다. 이러한 組織의 原動力이 되는 大學圖書館 司書의 任用과 待遇問題는 어떠한가.

a. 任用

圖書館法 第26條에 「學校圖書館의 職務를 擔當할 職員으로서 實業高等專門學校, 初級大學, 大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에는 司書職員을 두어야 하며 (以下略)」로 大學圖書館에 司書職員을 두어야 한다고 規定하였으며, 圖書館法施行令 第4條에 「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의 資格은 正司書와 準司書로 한다」로 司書職員의 資格을 規定하였습니다. 그리고 公務員試驗施行規定의 「별표 1」에 「특수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표」에 「3급은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 4급은 정사서 및 준사서 자격증 소지자」로 應試자격을 두고 있으나 5급에 대해서는 학력이나 자격에 관해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司書職員의 資格에 대해서 正司書와 準司書로 區分하였는데, 公務員任用의 저촉을 받지 않을 私立大學圖書館 司書職員 任用을 除外한 國公立大學圖書館의 任用에 必要한 試驗實施機關 및 試驗科目은 어媛지?

(1) 試驗實施機關

國家公務員法 第34條에 「①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총무처가 실시한다. 다만 총무처가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난한 경우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한다. ② 행정기관소속 3급공무원의 승진시험 및 3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총무처가 실시하고 4,5급 및 기능적공무원의 전직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고 되었습니다. 이에서 보면 3급공무원의 升進 및 轉職試驗은 總務處가 實施하고 모든 採用試驗은 總務處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關係機關 共同으로 實施하고 4,5급의 轉職試驗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이 實施케 하고 있습니다.

(2) 試驗科目

司書 또는 準司書의 資格 所有者가 國公立大學圖書館 司書職員으로 任命되기 위하여 國家公務員法에 의한 任用試驗을 치러야 함은勿論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5급 사서 서기 공개채용시험입니다. 시험과목으로 3,4급 공개채용시험에나, 3,4,5급의 특별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는 도서관학에 관한 시험과목이 있는데 다만 5급의 공개시험에만 없는 것은 理解가 안가는 點입니다.

圖書館에는 專門司書職 외에 이를 補助할 一般書記職도 必要함을 감안해서 제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렇다면 正司書 準司書 資格所有者는 4級부터 任

用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않고 5級부터任用된다면 圖書館法 第26條와 同法 施行令 第4條에 司書 및 準司書資格을 정해 놓고 試驗科目에 圖書館學에 관한 科目도 없이 단지 公務員 採用試驗에 合格한 者라면 司書職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5級의 任用令과 司書資格基準이 相異한 것이며 司書職의 質을 低下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大學에 知的 에너지를 供給하고 그 大學의 學的面 發展에 副應할 大學 圖書館의 機能을 左右할 人的 資源面에서 큰 차질을 招來할 것입니다.

b. 司書職員數

司書職員의 數를 圖書館法施行令 第6條에 規定하였는데 이는 너무 過少하게 規定한 것입니다. 즉 深奧한 學問研究와 人格陶冶의 象牙塔인 大學의 目的을 完遂시키는데 不可缺한 大學圖書館의 業務는 過重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學界의 進展과 새로운 學術의 業績의 發見 그리고 이에 따른 各種의 出版 및 特殊資料의 洪水的인 發行物 등의 整理 保管은勿論, 이들 1次의 資料를 綜合하여 情報奉仕를前提로 하는 2次의 資料의 作成 提供 作業 및 近世에 와서 擡頭되어 文獻整理 檢索利用에 莫大한 便利를 안겨 준 “콤피터”取扱 등 그 業務는 學究的面의 補助와 아울러 複雜多端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在學生뿐만 아니라 교육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교원 및 동 54조에 규정된 사무직원 등등을 奉仕 對象으로 하여야 할 司書職員의 數로서는 増員이 되어야 합니다.勿論 圖書館에는 司書職員만이 아니라 一般事務職員도 있어야 하는데 圖書館法施行令에 明示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補助的 役割을 할 一般職員은 教育法施行令 第54條에 該當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司書職員만으로 運用한다는 것인지 또 司書職員數에 補助役割을 擔當할 一般職員도 包含되어 있다는 것인지 明確性이 必要합니다.

c. 待遇

法上에서 資格規準을 論하고 社會的으로 司書職이 한 專門性을 띠운 이 職種을 待遇面에서 볼때 一般職과 달리 아무 優待가 없으며 또 待遇에 대한 特別한 規定도 없습니다. 國公立圖書館의 司書職은 公務員法에 의한 一般職公務員俸給에 準하고 있으며, 私立大學圖書館의 司書職은 一般事務職俸給에 準하고 있습니다. 大學圖書館은 深奧한 學問研究와 또 高邁한 人格의 陶冶를 위한 大學教育의 目的을 完遂하는데 있어 講義計劃과 實行에 대하여 充分한 奉仕를 하는 外로 高度한 研究에 精進하는 教授로부터 新入學生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필요로 할 자료정보의 提供 案내와 檢索奉仕를 使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서 大學圖書館

의 專門職 司書의 待遇는 응당 다른 措置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手當支給

司書職의 職務內容이 一般職과 달리 위생면, 학술면 및 과중한 업무면에 奉職하고 있는 만큼 勤務條件을 감안하여 司書職手當을 支給하여야 할 것입니다. 現在 國立의 몇 大學에서는 이를 實施하고 있으나 其他 國公立大學과 私立大學圖書館에는 이의 支給이 없다. 하루빨리 이를 規定化하여 手當의 惠澤을 받게 措置를 바랍니다.

(2) 教授職位

專門職司書는 그 學究的研磨에 있어 講壇에서 學生들에게 知識을 傳授하고 研究方法을 指導하는 教授職과 同一한 奉仕를 圖書館資料 利用面에서 擔當하고 있으며 現在 大學에서 專任教授 位置에서 學生들의 相談과 指導하는 Counsellor과도 同一한 位置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見地에서 專門職 司書의 待遇를 教授職의地位와 同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美國의 각 大學에서 이런 制度를 採擇한 大學도 많으며 특히 Felix E. Hirsch가 議長으로 있던 大學 및 研究圖書館協會 基準委員會(ACRL Committee on Standards)에서 「專門職 司書는 教授의 地位를 갖어야 하며 教授陣이 亨有하는 條件을 가지야 한다」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幹部職員의 教授職 關與에 대한 것을 日本 文部省 學術局에서, 그리고 日本私立圖書館協會에서는 「私立大學圖書館의 專門職 司書의 教授職待遇」를 發表한 바 있습니다.

要是在 見地에서 專門職에 대한 法的 地位의 向上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大學圖書館에서 勤務하는 司書라고 하여 全部 이런 待遇를 바랄수는 없는 것입니다. 教授와 같은 待遇를 받을 수 있는 資格을 具備하여야 하며 이는 (1) 도서관학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 도서관학과 졸업자로서 타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3) 대학도서관에 어느 핵수 이상 근무하고 있는 司書資格 所持者가 圖書館學科에 關한 著書 또는 研究論文을 發表하고 어느特定機關의 審查에 合格한 者로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大學圖書館 自體가 繼續的奉仕에 대한 研究業績을 쌓아個人의 學的 向上去 精進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研究의 比較 檢討에서 大學圖書館은 發展할 것이며 이로써 大學教育 目的 完遂에 現在 보다 더 한층 機能을 發揮하게 될 것입니다.

三. 結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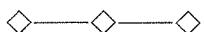
모든 法은 社會性 變遷에 따라 改正되는 것이고 또
(11面에 계속)

書館은 第1次로 市, 郡教育長(서울特別市, 釜山直割市教育委員會를 包含한다) 第2次로 道教育委員會, 第3次로 文敎部長官의 指導, 監督을 받는다』라고 規定하였으나 公立의 公共圖書館에 대하여서는 指揮 監督에 관한 明確한 規定이 없다. 이렇게 볼 때 前記한 所屬廳別로 본 圖書館中 私立의 公共圖書館 14個館과 文敎部에 所屬된 17個館은 實質的으로 文敎部의 指揮 監督을 받고 있는 셈이고, 内部部에 所屬된 圖書館은 文敎部의 指揮 監督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公共圖書館의 使命과 機能이 社會教育에 屬해 있으므로 모든 公共圖書館은 形式的인 面에서 文敎部의 指揮 監督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公共圖書館의 所屬廳이 文敎部와 內務部로 二元化되어 있기 때문에 指揮 監督의 問題, 財政問題等 公共圖書館의 政策과 그 遂行上 여러가지 問題點이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그 所屬廳을 一元化하여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맺는 말

以上 現行圖書館法中 公共圖書館의 設置問題, 施設問題, 豫算問題, 司書職員問題, 圖書館의 使用料問題, 所屬廳의 一元化問題등에 대하여 言及하였으나 이밖에 도 소소한 問題點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들 問題의 解決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財政과 直接關聯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點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바不是 아니다.



(16面에서 계속)

要求의妥當性 如否에 따라 그 時代에 알맞게 改正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制定當時의 法의 內容은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맞이 않는條項도 發見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圖書館關係의 諸法도 그當時로는 適法이였으며 現在에도 適法이긴하나 極少部分이 本人이 본見地에서 改正 또는 补強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상기와 같이 問題點을 提起하였고 이에 다음과 같은 結論을 맺는 바입니다. 다만 本人이 法學徒가 아니므로 法條文 引用 및 說明에 不實함이 많을 것을 사과합니다.

結論을 말하면,

1. 施設問題

大學設置基準令 第11條에 「圖書館의 設備는 따로 法으로 定한다」라고 이를 圖書館法施行令 第2條 2項에 圖書館에 必要한 各室의 名稱을 補完했으면 합니다.

2. 資料問題

b. 圖書館의 資料를 圖書라는 語彙에만 局限시키지 말고(定刊物이란 語彙도 있지만) 特殊資料도 包含시켜

그러나 再三 말할거니와 公共圖書館은 教育機關이요 文化機關으로서 地域社會發展과 福祉社會建設에 없어서는 아니될 機關이므로 健全한 發展을 위한 法의 制度와 制度의in 確立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重要的責任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모든 分野에 있어서 維新課業이始作되고 있으므로 우리 圖書館人은 專門職으로서의 倫理와 精神을 가지고 圖書館奉仕에 臨하여야 하며 政府는 過去의 모든 制度의 未備點을 改善하고 健全한 政策을 세워 國家發展과 福祉社會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参考文獻

- ① 張一世 「圖書館法의 問題點」 出版文化, 1970年 5月 pp. 15~18
- ② 鄭馳謨 「圖書館法은 改正되어야 한다」 出版文化, 1972年 5月
- ③ 李喆珪 「圖書館法에 對한 考察」 도서관, 1971年 7月(v. 26. No. 7) pp. 19~23
- ④ 윤학구 「현행 圖書館法의 問題點」 도서관, 1971年 7月(v. 26. No. 7) p. 35~38
- ⑤ 金基泰 「公共圖書館 育成法(奉仕法)을 提言한다」 國회도서관보, 1971年 11月(v. 8. No. 7)
- ⑥ 金鍾鼓 「우리나라 圖書館의 發展策」 國회도서관보, v. 7 No. 2(1969년 3월호)

圖書館資料로 文句修正을 했으면 합니다.

b. 大學設置基準令에 規定된 學生 1人當의 冊數 代身 그 大學의 經常豫算의 몇%를 資料 贈入費에 充當도록 하고 文敎當局이 이의 執行 監督을 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大學圖書館이 바라는 質的 藏書構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 司書職問題

a. 任用과 人員數

司書職의 任用試驗에 5級에는 圖書館學에 關한 課目이 없는 것으로 보아 正司書 및 準司書의 初任은 4級부터 任用하되 各級 大學圖書館의 폭주되는 奉仕 業務를 감안하여 4級 以上의 圖書館職員數를 增員하여야 합니다.

b. 待遇 問題

司書職手當을 모든 大學圖書館 職員에 支給하게 하며 專任教授와 同一한 學位와 研究業績이 있는 專門職司書의 地位를 教授職과 同一하게 規定되기를 바랍니다.